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3. 5.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15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1일
- 라. 상정일자 : 제17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2월 28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 가. 제안이유

-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새롭게 제작·발급함으로써 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청소년지도위원증 재질을 인쇄용지에서 PVC 재질로 교체하고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발급일과 위원임기를 추가하여 명시함.
-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정옥)

가. 본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원증을 새롭게 교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존 종이재질로 사용하던 신분증을 PVC 재질로 교체하고,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발급일과 위원의 임기를 추가하여 명시함.
-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근거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

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에게 기존 발급되었던 위원증을 내구성과 편이성 강화를 위해 종이재질에서 PVC 재질로 교체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원증에 기재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취지에 맞게 생년 월일로 대체하였으며, 발급일과 위원임기를 추가로 명시토록 함으로써 지도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0조와 안 제4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8 호
----------	---------

제출연월일 : 2013.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내구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위원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식 및 기재사항 변경 (별표1)

- 재 질 : 인쇄용지 120g/m<sup>2</sup> → PVC(폴리염화비닐)
- 기재내용 추가 : 발급일, 임기(3년) 명시
- 기재내용 변경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0조 및 제45조)

-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근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1.17~2.6, 20일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을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추진·운영하는데”를 “추진하고 운영하는데”로 한다.

**제2조** 중 “구는 청소년활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으로, “추진하고”를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으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발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년·소녀가정

**제45조** 중 “제44조제2항”을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적절한 홍보활동을”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적절한 홍보 활동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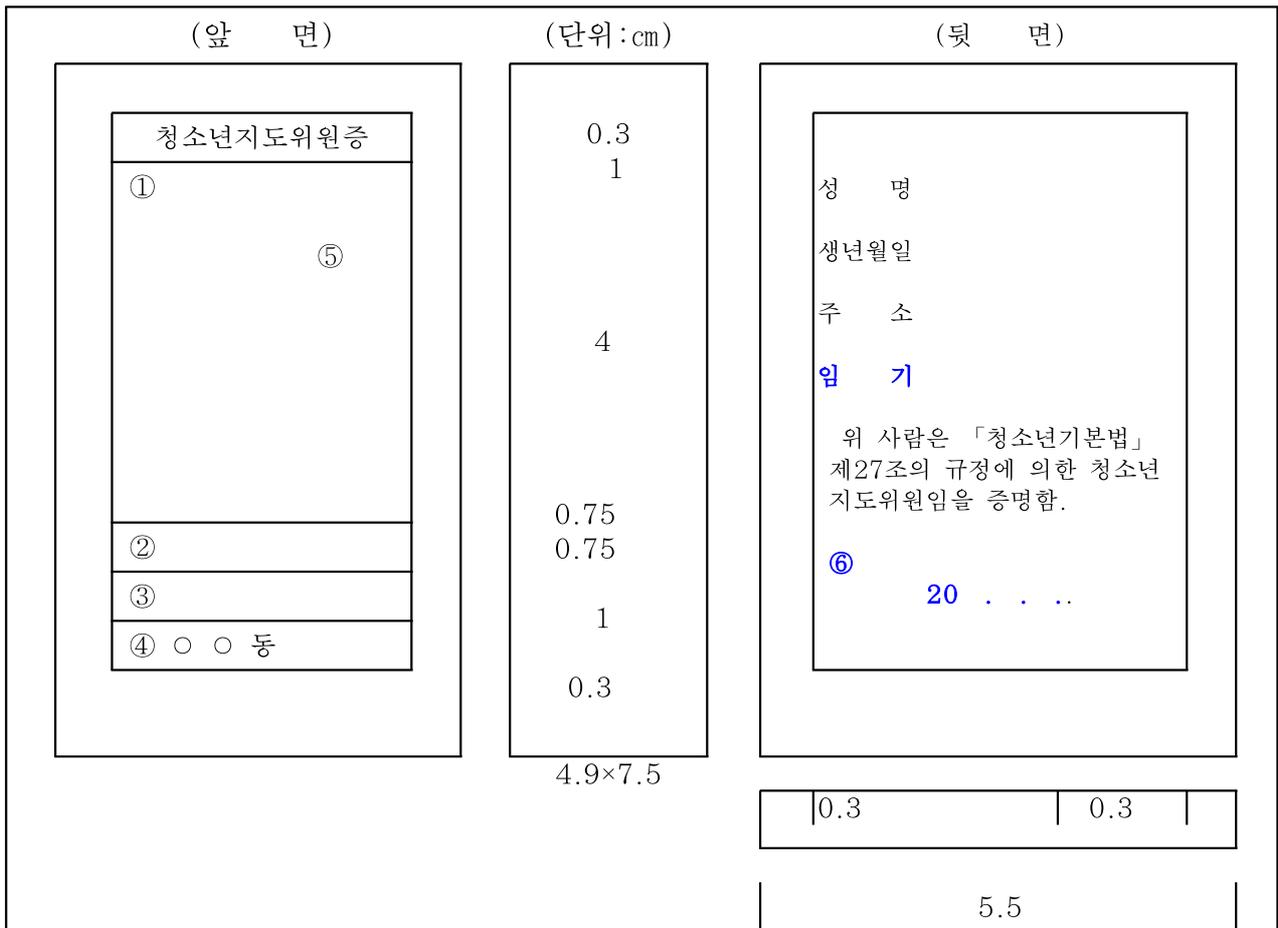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와 관련)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흰색 PVC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 × 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u>청소년보호법</u>」(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기본법</u>」 및 「<u>청소년보호법</u>」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 -----.</p>
<p>제2조(구의 책무) <u>구는</u> <u>청소년활동</u>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u>추진하고</u> 법과 <u>그 밖의</u>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이하 “구”라 한다)는 <u>청소년활동</u>----- ----- ----- <u>추진하고</u> 「<u>청소년기본법</u>」(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u>청소년보호법</u>」(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u>그 밖에</u> ----- -----.</p>
<p>제30조(수탁자 선정) ① (생략) ② 구청장은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p>	<p>제30조(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21조</u>----- -----.</p>
<p>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② (생략)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 저소득·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p>	<p>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저소득·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u></p>

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 5. (생략)

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 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발 심의회-----  
-----.

1. 소년·소녀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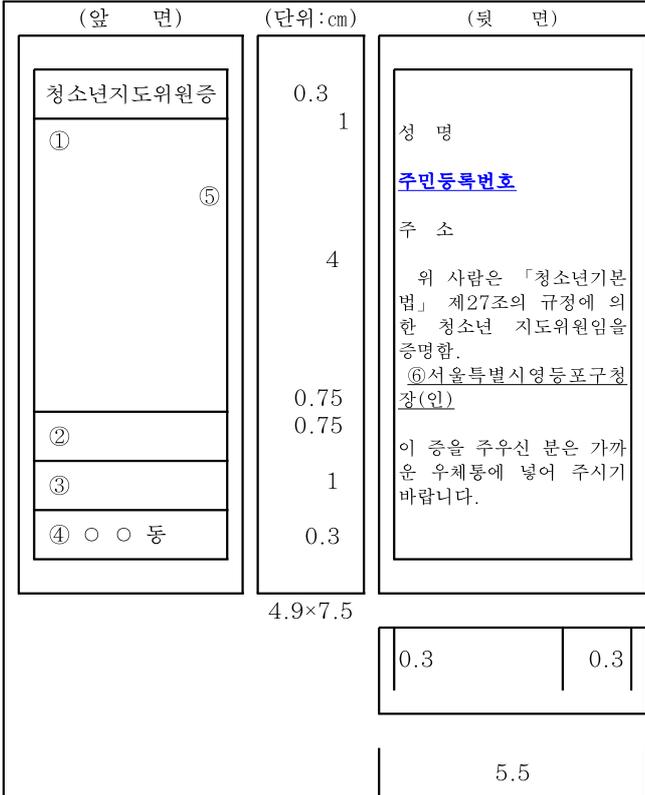
2. ~ 5. (현행과 같음)

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  
--- 제49조제2항-----  
-----.

제48조(홍보) -----  
-----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적절한 홍보 활동을 -----.

## 현 행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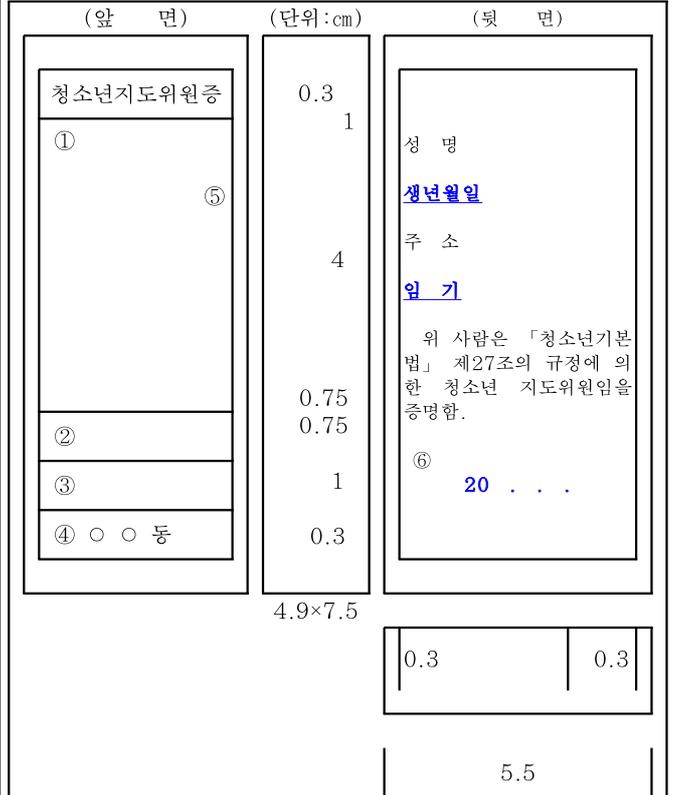


(비교)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sup>2</sup>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 × 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 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 개 정 안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와 관련)



(비교)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흰색 PVC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 × 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 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